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08호 2014. 1.28.(화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
규칙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4년 1월 28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20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본청·구의회·직속기관·사업소·동”을 “본청·구의회·직속기관·사업소·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나목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후단 중 “상급자에게는 대하여”를 “상급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

로 한다.

제15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직무관련 강의·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외부강의 대가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천원/1시간)

구 분	구청장	4급 이상	5급 이하	비 고
상한액	300	230	120	원고료, 여비는 미포함
1시간 초과	200	120	100	

※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,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.